



고용노동부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

수신 의정부지청 관내 건설현장 귀하

(경유)

제목 건설현장 산업안전 분야 민원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

1.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최근 건설현장 산업안전 분야 민원 접수 시 접수가 불가능하여 반려 처리되는 민원이 많아 유의사항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선·해임 신고서는 건설업 양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알맞은 민원 및 양식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민원명	신청	신청자격	처리기간	서식파일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(건설업)	신청	사업주(기업회원)	7일	다운로드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(건설업)	신청	사업주(기업회원)	7일	다운로드

나. 대부분의 산업안전 분야 민원은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으므로, 노동포털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에 사업주 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 (개인이 임의 해임신고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음)

3. 또한, 민원을 노동포털(<https://labor.moel.go.kr>)로 전자접수하시는 경우 접수증 출력, 민원 처리현황 조회, 선·해임확인서 출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, 민원 접수 시 노동포털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엄도윤

과장

전결 2026. 9. 7.

신동국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감독과-3881

접수

우 11803

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 (민락동 732-12 마에스트로빌딩), 4층

www.moel.go.kr/local/uijeongbu/index.do

전화번호 031-850-7672

팩스번호 0503-8803-1088

/ doyun1996@korea.kr

/ 비공개(7)